



※ 이 감사결과는 감사당시 관계법령, 조례, 규칙 등에 의하여 수감된 내용으로 감사이후 관계법령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≡ 2018. 11. 5 ~ 11. 9 ≡

## 완도읍사무소 정기종합감사 결과



완 도 군  
(기획예산담당관)

# I . 감사실시 개요

## 1 감사배경 및 목적

- 완도읍은 2016년 10월 종합감사를 받은 이후 감사를 받지 아니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게 되었으며, 이에 업무전반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,
-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감사주기 등을 고려하여 2018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감사 실시

## 2 감사대상 및 범위

- 감사대상 : 완도읍
- 감사범위 :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0월말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

## 3 감사기간 및 인원

- 감사기간 : 2018. 11. 5. ~ 11. 9.(5일간)
- 감사인원 : 감사팀장 외 3명

## 4 감사중점사항

- 군수 지시사항 및 주요 민원처리 상황
-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
- 공사업무 설계·시공·준공검사의 적정성
- 민원업무 처리의 적정성 및 지방세 과세 누락사항
- 사회복지보조금 및 수당지급의 적정성
- 농지전용 및 사후관리, 각종 보조금지급 적정성 등

## II. 감사결과

### 일반행정·민원분야 (5건)

#### ① 출장 관외여비 부적정 지급에 관한 사항

- 출장 여비 지출시 영수증 미첨부, 운임비 과다지급 등 총 18건, 727,000 원을 부적정하게 지출하였으며, 개인별 지급내역과 함께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야 하나 개인별 지급내역 없이 지급을 하는 등 출장여비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#### ② 민원업무 처리 지연에 관한 사항

- 2016년 ~ 2018년도 각종 민원 11,457건을 접수 처리하면서 “결과입력지연” 등의 사유로 최소 1일에서 최대 95일까지 43건에 대하여 처리기한을 경과하여 지연처리 하는 등 민원사무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#### ③ 회계관계 공무원 직무대리 지정 미지정

- 2017. 2. 2.(3일간), 2018. 8. 8.(3일간) 지출원인 총무담당의 부재중 기간 동안 회계관직 직무대리 지정없이 총19건 / 27,357,470원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자금승인 및 지급명령을 발하여 지출업무를 처리하는 등 회계관계공무원 부재시의 지출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.

#### ④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사항

- 지방행정7급 박00는 2016. 10. ~ 2018. 9.까지 총 15회에 걸쳐 최종퇴청자가 청사보안장치(무인경비)를 설정하였음에도 심야복귀 후 청사보안장치를 해제하여 근무를 하지 않고, 초과근무수당 수령을 위해 지문인식을 한 사실이 있다.

## ⑤ 관용차량 운행일지 작성 소홀

- 관용차량을 관리하면서 차량별 실제운행거리를 확인하지 않고 일상적인 일일평균운행거리를 차량운행일지에 기록하는 등 하여 차량 게이지에 표시된 총 주행거리와 차량운행일지상 대비 주행거리가 -31,055km에서 7,368km까지 차이가 나는 등 관용차량에 대한 기록유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## 세 입 (1건)

### ①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누락에 관한 사항

- 2018.07.13.일 농어가 주택 건축(차00)외 5건 기간내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취득 세 2,198,900원이 과세 누락되었는데도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지 않는 등 과세자료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,
- 완도읍 장보고대로 박00 외 13건에 대하여 면허세 126,000원을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 하지 않는 등 과세자료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## 복지 (1건)

### ① 경로당 및 경로복지센터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소홀

- 완도읍 관내 경로당 및 경로복지센터에서는 보조금 전용 계좌 및 전용카드를 일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, 지출의 대부분을 현금 또는 간이영수증으로 정산하고 있으며,
- 또한, 2016년 ~ 2018년 기간중 운영비로 지출이 불가한 각종 물품구입 (냉장고 등) 및 보수공사, 중식비 등으로 109건 37,368천원을 부적합하

게 지출하는 등 ‘경로당 운영비 집행 지침’에 따른 경로당 운영비 집행에 대해 지도·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## 농림·수산(1건)

### ①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추진 소홀

- 2016. 11월 ~ 2018. 10월 까지 순천시 김00외 3명으로 부터 주말체험 농장 경영을 목적으로 한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신청을 받고 업무를 처리하면서, 신청인과 가족의 총 소유면적을 조회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 증명원을 발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여 위법하게 발급한 사실이 있다.

## 공사계약 (3건)

### ① 건설공사 감독소홀 및 공사비 과다 집행

- 완도 정도 배수로 정비공사 외 4건의 부족 시공된 7,269천원에 대한 감 액 또는 재시공 요구 없이 대가를 지급하는 등 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업무 소홀.

### ② 하수도 원인부담금 부과 소홀

- 완도읍에서는 건축주(양 00)가 2017. 9. 4일자로 신청한 완도읍 군내리 신축 건물(숙박시설)에 대해서 오수발생량이 1일 39.66m<sup>3</sup>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임에도 69,624천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, 건축물 사용승인(2018.8.1.) 이후 2018. 8. 28일자로 부과하여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### ③ 시설공사 원가계상 환경보존비 미반영

- 완도읍에서는 완도 화흥 하천 복구공사 외 9건의 시설공사 원가 계상시 환경보전비를 반영하지 않아 환경훼손, 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## 건설행정 (2건)

### ① 옥외 광고물 업무 소홀

- 지역개발과에서는 변경된 「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」 내용을 읍면에 시달하지 않았으며, 이후 2018. 6. 12일에서야 공문시달하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,
- 읍·면에서는 2018. 1월부터 6월까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진흥에 관한 일부조례개정 이전 수수료 3,000원으로 수납하여 총 851건 1,702,000원의 세입 손실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### ② 대형폐기물 수거 판매대금 납부 지연

- 완도읍에서는 「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 제22조(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수수료의 부과·징수) 제3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거 스티커를 발매하고 발매대금을 그 다음날 세입금 수납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함에도, 2016 ~ 2018년 감사일 현재까지 발매 대금을 최소 2일에서 최대 5일까지 늦게 입금하는 등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매대금 입금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